

# 계약학과 설치 운영 Q&A



2012. 3.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목차

I. 계약학과 개요 .....	1
II. 계약학과 설치 운영 방법 .....	4
III. 유사제도 비교 .....	6
IV. Q&A .....	7
1. 총칙 .....	7
2. 설치 및 운영 .....	14
3. 수업 및 학사운영 .....	26
4. 회계관리 .....	30
5. 행정재제 .....	33
6. 기타 .....	36

### I 관련 법령 I

붙임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39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
3. 고등교육법 시행령 .....	42
4. 계약학과 운영요령 .....	44
5. 사업주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51

# 1 계약학과 개요

## □ 목적

- 산업체 수요에 의한 대학의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 교육과정에 내재화함으로써 실용적 인재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및 산업체 등의 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분야 인력 양성

## □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계약학과 운영요령

## □ 추진경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3.5.27, 법률 제 687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3.9.19, 대통령령 제18101호)에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근거 마련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개정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모집정원 조정(3/100 ⇒ 10/100)(‘08. 1)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시 교지·교사의 소유주체 완화 및 교사·교원확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09. 4)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개정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산업체 부담금을 학자금 100% 지원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 주체를 학생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으로 명확히 함(‘12.1.25)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부담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12.2.27)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학과를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 운영할 경우 정원감축 등 제재 근거 신설(‘12.3.2)

## □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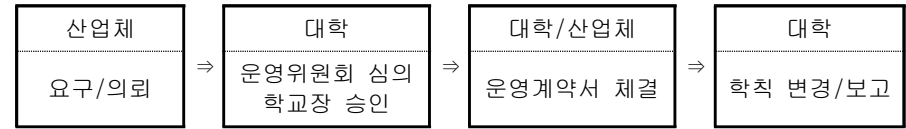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정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치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제9조
유형	①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②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설치 주체	대학, 전문대학
부담 주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 부담
산업체 경력의 학점 인정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학생 정원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채용조건형) 제한 없음(재교육형)

□ 연도별 운영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	학생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채용조건형	3	182	5	7	457	5	13	434	10	18	596	21	34	931
재교육형	35	4,031	38	156	5,598	51	185	6,096	69	253	8,620	85	327	10,240
합계	38	4,213	42	163	6,055	53	198	6,530	71	271	9,216	89	361	11,171

**2** 계약학과 설치 운영 방법

□ 계약학과 설치 절차



□ 계약학과 설치 학과 및 과정

-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학부(모체 학과)를 우선 활용하거나 새로운 학과·학부 설치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등 당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위 과정

□ 학칙 기재사항

- 계약학과의 명칭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의 그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수업 및 학사운영

- 수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
-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
- 직원 재교육 등을 위한 계약학과의 경우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은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 학생정원 및 선발

- 계약학과의 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30조에 돌 불구하고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등의 경우,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 선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비용부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산업체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상계할 수 있음

**3** 유사제도 비교

구분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	재직자 특별과정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의2 ○2012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설치주체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각종학교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산업체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등	○좌와 동일	○좌와 동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산업체 납부금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예외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1차 산업 종사자는 공적증명서 확인으로 인정	○좌와 동일
설치절차	○대학과 산업체 계약학칙에 기재	○좌와 동일	○대학자체 결정학칙에 기재
교육여건	○교원,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 없음	○모집단위별 전임교원확보율 : 50% 이상(전문대학은 겸.초빙포함 전체 85% 이상 가능) ○교사확보율 : 50% 이상(전문대학은 65% 이상) ※ WCC 선정 대학은 제외	-
경비부담	○산업체 : 50%~100% ○학생 : 50% 이하	○학생 : 100%	○학생 : 100%
	○현물 한도 : 20%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정원	○채용조건형 : 입학정원 10% ○재교육형 : 학칙으로 정함(정원이 따로 없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대학 : 50% 이내 - 전문대학 : 교원확보율 비례(겸.초 포함) ※ WCC 선정 대학은 제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1% 이내
입학자격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외 인정	○9월 이상 재직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공인증명서 첨부	○좌와 동일	○좌와 동일

## ※ 범례

법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요령 : 계약학과 운영요령

## 총 칙

## 【질문1】 계약학과란 무엇인가?

## □ 답변

-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3.5.27, 법률 제6878호)

## 【질문2】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이라 함은?

## □ 답변

-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학교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시행령 제2조제2항1) 각호의

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학교를 의미하는 것임

**【질문3】 각종학교 및 기능대학도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 답변**

- 각종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학교로 법 제2조제2항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해당되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계약학과는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기능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로 법 제2조제2항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문대학 과정인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질문4】 계약학과 의 설치·운영 형태는?**

**□ 답변**

- 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질문5】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란 ?**

**□ 답변**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제1항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임
- 산업체 부담금에는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산업체가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20% 이내의 현물도 포함하는 것임

**【질문6】 계약학과 의 설치·운영 계약 체결의 주체는?**

**□ 답변**

-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 및 의뢰가 있어야 설치·운영이 가능하므로 계약학과의 설치 주체는 산업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입학원서에 산업체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학과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질문7】 “산업체”의 범주는?**

□ 답변

-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운영요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2) 의료기관의 종류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종합병원

**【질문8】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근로자”란 무엇인가?**

□ 답변

- 상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sup>3)</sup> 및 단시간 근로자<sup>4)</sup>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함

**【질문9】 운영요령 제2조제2항제5호의 “사업주 단체”란 무엇인가?**

□ 답변

-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주 단체가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용자인 사업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주 단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5명 미만인 산업체는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주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예)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가 아니므로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한 근로자를 말함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질문10】 운영요령 제2조제2항제5호 후단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란?**

**□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전액을 지원 하는 경우이며,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농지원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음

## 설치 및 운영



**【질문11】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은?**

**□ 답변**

- 당해 대학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학위과정에 한하여 산업체와 계약으로 산업학사<sup>5)</sup>·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다만,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만 설치·운영이 가능

**【질문12】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으로 변경하여 선발할 수 있는지?**

**□ 답변**

-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설치되는 학과로서 학위과정의 변경은 다른 계약학과의 설치와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계약학과의 학위과정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2항<sup>6)</sup> 및 같은 시행령 제4조제2항<sup>7)</sup>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여야 함

5) 산업학사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대학인 기능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위임  
6) ...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문13】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 답변**

- 계약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다만,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 설치로 인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질문14】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 답변**

- 권역은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간의 최장 거리로서 운영요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지역을 말함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권역” 내의 계약으로 간주함

예)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인 A사가 ○○권역 내에 있는 □□대학교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권역 내에 있는 A-1, A-2 등의 지사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문15】 학칙 및 운영계약서 기재 사항?**

답변

학 칙	운 영 계 약 서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3.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의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질문16】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 란?**

답변

○ 새로운 학과·학부의 설치에 산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의뢰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과 시설 등 여건은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대학에 유사한 학과·학부가 없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학과나 학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질문17】 계약학과의 명칭은 기존 학과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

답변

○ 법 제8조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기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나 유사한 학과(“모체학과”라 한다)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계약학과의 명칭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체와 계약으로 계약학과의 명칭을 모체학과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함

**【질문18】 계약학과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가?**

답변

○ 계약학과는 대학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등·하교로 인한 근무손실 경감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 또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 당해 계약에 참여한 산업체,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의 소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운영 계획서에 그

장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의 교지 및 교사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나 계약학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6항제4호 및 운영요령 제4조제4항에 의거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산업체 등의 소유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질문19】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나 사업주 단체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도 소유 시설로 볼 수 있는가?**

□ 답변

- 소유 시설이란 소유 주체가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설로서 산업체 또는 사업주 단체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므로 임대한 시설을 소유 시설로 볼 수 없으며,
- 대학의 교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질문20】 2개 이상의 유사업체와 연합하여 1개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 답변

- 산업체가 영세하여 단독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요령 제5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유사한 산업체가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질문21】 시행령 제8조제7항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란?**

□ 답변

- 계약학과인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학과 산업체간 계약으로 정하여 학칙에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계약학과인 설치 운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의뢰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업일수 및 학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함

**【질문22】 계약학과인 모집정원은?**

□ 답변

- 시행령 제8조제5항에 의거 계약학과인 모집정원은 외로 설치·운영이 가능
  - 채용조건형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재교육형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당해 대학의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을 책정한 후 학칙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질문23】 시행령 제8조제5항에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 의미는?**

□ 답변

- 대학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
- 다만,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문24】 계약학과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가?**

□ 답변

- 의료인력을 비롯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의료인력 등은 계약학과로 양성할 수가 없음

**【질문25】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답변

-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나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소유주체 완화(제2조제6항제4호)
- 학과·정원 증설·증원시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제2조의3제3항)
- 단, 원격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질문26】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은?**

□ 답변

- 기본적인 요건으로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추고 당해 산업체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이므로 반드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계약한 당사자인 산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하며,
- 당사자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나 고객업체 등의 직원은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음

**【질문27】 입학자격의 확인 방법은?**

□ 답변

- 당해 산업체가 발급한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대학에서는 매학기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 재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 산업체는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

**【질문28】 운영요령 제8조제1항각호 중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 답변
- 전문대학·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임

**【질문29】 계약학과 의 학생 선발은 신규 입학 과 편입학 모두 가능한가?**

- 답변
-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계약학과 의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당해 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 에 신규 입학 또는 편입학 모두 가능함

**【질문30】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의 합의를 통하여 학생 납부금을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

- 답변
-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초과하여 납부하게 할 수는 없음

**【질문31】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 답변
-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학과 학생을 일반학과 학생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는 없음

**【질문32】 계약학과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

- 답변
-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

하여 산업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며,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 신분이 상실되고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운영요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입학울 취소하거나 재적 처리하여야 함

-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비록 타 산업체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학적을 유지할 수는 없음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학칙 또는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름

## 수업 및 학사운영

**【질문33】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답변

-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산업체가 요구하거나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체 소속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수자격이 있는 자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음

**【질문3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방법은 기존 학과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할 수 있는가?**

답변

-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산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체의 요구나 의뢰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나,
  -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계약으로 정하여 학칙에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체가 기존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함

**【질문35】 계약학과의 수업방법은?**

답변

- 계약학과는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음
- 다만, 출석수업은 전체 수업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격대학은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하여 20% 이상을 반영하여야 함

**【질문36】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란?**

답변

- 산업체의 노하우 등 현장의 실무 경험 등을 전달하여 산업 적합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수자격이 있어야 하며, 당해 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야 함

**【질문37】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 인정은?**

답변

-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8조제8항에 의거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나 인정 범위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임

**【질문38】** 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시행령 제8조제8항에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에 취득하게 되는 산업체 경력은 인정될 수 없음

**회계관리**



시설 사용료나 현장실습에 제공되는 장비 등의 운영비 및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행정지원 등을 이유로 한 부담금의 상계는 인정되지 않음

**【질문39】 계약학과 교육비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답변

-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하여야 함

**【질문40】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은?**

답변

-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가액을 산정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20% 범위 내에서 현물로 상계할 수 있음
- 이 경우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 장비 등의 소유자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산업체라야 하며, 소유자가 다른 산업체의 시설 장비 등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질문41】 운영요령 제19조 중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로 상계할 수 있는 현물의 적정가액이란?**

답변

- 시설 장비 등 현물의 적정가액이란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 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전기료, 청소비 등 공과금, 시설 운영비,

## 행정재제

### 【질문42】 계약학과를 위법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제재 기준은?

□ 답변

-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계약학과 학생이 아닌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수준	
	1차	2차이상
1. 법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 【질문43】 행정재제의 일반기준?

□ 답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함
-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며,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함

기 타

**【질문44】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란?**

□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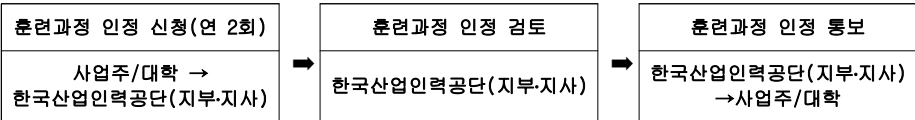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이 학위를 수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분야의 계약학과를 직업교육훈련과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질문45】 훈련과정 인정신청 절차는?**

□ 답변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이·공계 분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에 과목별로 과정인정을 신청하여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 인정 절차 >**



- 지원대상은 재교육형 계약학과로서의 비용부담원칙(산업체 부담 50% 이상)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함

# | 관련 법령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고등교육법 시행령
4. 계약학과 운영요령
5.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 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8.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9.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③ 계약학과 등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에 있어서 학생선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⑤ 계약학과 등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⑦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학과 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신설 2012.3.2>

###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71조의2 관련)

#### 1. 일반기준

-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마.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바.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되,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또는 학생정원 동결의 행정처분을 한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아.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이 목에서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 을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정 2008년 12월 30일

개정 2012년 3월 12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② 계약학과에는 산업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대학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의 계약으로 본다.

② 계약학과는 제15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등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드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③ 계약학과에 설치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학과에의 설치 운영기간)** 계약학과에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7조(학칙 기재사항)** ① 대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에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②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학사관련 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계약학과에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



8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원격대학의 계약학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업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②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매학기 재직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음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에만 두되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전의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법에 의하여 제1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제2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3 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12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계약학과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한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 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계약학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매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제 4 장 회계 관리

**제17조(회계 관리)**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체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대학과 산업체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등이 제공하는 경우, 산업체등이 납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상계할 수 있는 부담금은 계약학과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6 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등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조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1>과 같이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수준	
	1차	2차이상
1. 법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 부 칙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령에 의한다.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정 2009. 8.11.  
개정 2010.10.11.  
개정 2011. 1.24.  
개정 2011. 5.30.  
개정 2011.12.30.  
개정 2012. 2.2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제3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2. “재직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채용예정자”란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구직자”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

직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6.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하 “수탁훈련기관”이라 한다)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7.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1.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13.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이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용(선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14.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대체인력」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제2장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제3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육과정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
  -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산업교

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산업학사·학사과정

4. 외국어 습득이나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응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제4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①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체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 가.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다만, 「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이거나 훈련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 나. 훈련생이 기명날인하는 출석부 등을 활용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할 것
  - 다.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출 것. 다만, 자체훈련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훈련은 제외한다.
  - 라. 그 밖에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2. 현장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 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것
  - 나.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훈련목적, 훈련내용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

- 다.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라. 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 미만(최대 600시간 이하)일 것
  - 마. 해당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반장 및 조장 또는 이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3.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4호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 나. 콘텐츠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우선지원대상기업은 8시간 이상)
- 다. 2개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된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콘텐츠 분량의 합계가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8시간) 이상일 것. 다만, 개별 콘텐츠의 최소 분량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콘텐츠에는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마.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 바.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출 것(위탁훈련에 한정한다)
  - 사.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 아.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4.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일 것
  - 나.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지도,

-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가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
- 다. 훈련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 라.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평가 외에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학습활동을 부여할 것
  - 마. 나목에 따른 교재에는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다만, 교재 이외의 보조교재 및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 바. 사업주 훈련비 결제시스템을 갖출 것(위탁훈련에 한정한다)
  - 사.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 아.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5. 혼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 가. 집체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집체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해당요건 중 훈련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나. 현장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훈련과정의 요건 중 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것. 다만, 훈련시간은 병행하여 실시되는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 미만(최대 60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 다. 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원격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요건 중 콘텐츠분량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라.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평가 등이 서로 연계되어 실시될 것
  - 마. 훈련과정별 훈련 실시기간은 서로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절차,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사항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원격훈련과정의 적정성 등 심사)** ①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콘텐츠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는 “콘텐츠 등”이라 한다)의 적정성 여부는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훈련분량의 적절성,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적합 여부, 훈련내용·방법의 적정성, 훈련평가 방법·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정하다고 심사된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훈련시장에서의 공급 정도, 훈련내용·방법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은 콘텐츠 등은 심사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은 심사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제2항에 따른 등급 부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제2항에 따른 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법, 심사방법·절차, 세부심사기준 등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훈련실시계획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훈련실시신고 등)**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다만,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
2. 훈련종료일부부터 14일 이내(다만, 원격훈련은 훈련종료일부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서

②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까지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3. 훈련실시 장소에 관한 사항(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의 변경 없는 훈련실시 장소의 변경에 한정하며, 동일건물 내에서 강의실 변경은 제외한다)
4. 훈련수료기준에 관한 사항(원격훈련과정의 훈련수료기준이 상향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5.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의 변경이 없는 직업능력개발 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변경
6.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콘텐츠 또는 우편 원격훈련과정의 교재의 변경에 관한 사항(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의 다음날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은 「전자정부법」 제2

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훈련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훈련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나.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모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가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진도율이 전체 학습진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2개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될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

3. 우편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모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가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평가 이외에 주 1회 이상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 참여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을 수행할 것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4. 혼합훈련과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인력의 채용일은 해당 근로자의 훈련 시작일 이전 14일부터 시작일 이후 7일까지 일 것

2. 대체인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제3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9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3의 조정계수,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훈련

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외에 인정받은 훈련시간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2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⑤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하는 경우 훈련실시 중 훈련생이 중도 포기하였으나 해당 훈련생이 1개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⑥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위탁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외에 식비는 1일 3,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8,500원(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월 212,500원 한도)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⑦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훈련시간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사업주가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원금. 다만, 훈련비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⑧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 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 외의 지원금은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제11조(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4)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



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제12조(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과 별 제53조에 따른 평가등급을 반영한 금액(별표 5)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별 제53조에 따른 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 중 훈련기관 평가등급 C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③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5)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제13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5호라목에서 “기능·기술 장려를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2.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14조(교대근로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 특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

조제2항후단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5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 등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6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_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 제4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제17조(차등 지원)**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자체훈련의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3.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우편원격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중 훈련기관 평가등급 C등급에 지원되는 지원한도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 제5장 보칙

**제18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2월 26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부칙 <2009.8.11. 제2009-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훈련과정 인정일로부터 1년간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09.1.2)」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21호, '09.1.2)」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턴 201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에 훈련과정 인정이 만료되는 우편원격훈련과정은 2010년 3월 31일까지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09.1.2)」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21호, '09.1.2)」을 따른다.

③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콘텐츠에 대한 심사 등급을 부여받은 콘텐츠는 이 규정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콘텐츠 심사 유효기간 내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훈련과정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09.1.2)」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21호, '09.1.2)」을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콘텐츠 심사등급을 부여받은 일자가 2008년 3월 31일 이전인 콘텐츠는 2010년 3월 31일까지, 2008년 4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의 콘텐츠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각각 이 규정에 따라 콘텐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콘텐츠 등급, 지원금액 등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폐지한다.

1.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09.1.2)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21호, '09.1.2)

### 부칙 <2010. 10.11. 제2010-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다목, 제3호의바목, 제4호의바목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인터넷원격훈련 및 우편원격훈련 실시 실적(인원)이 연간 1만명에 미달되는 훈련기관이나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사목 및 제4호의사목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차등 지원은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실시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훈련이 시작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 1.24. 제2011-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30. 제2011-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심사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은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콘텐츠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은 이 고시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은 이 고시 제13조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기능·기술 장려를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기능장려법」(2010.5.31.법률 제10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 사업체에서 기능장려 우수 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한 근로자는 이 고시 제13조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근로자 중 생

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본다.

**부칙 < 제2011-73호, 2011. 12. 3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11-28호, 2012. 2. 24.>**

이 고시는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격훈련인정요건			
1. 인터넷원격훈련			
① 인터넷 원격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자체/위탁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과정별로 훈련생 500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li> <li>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li> <li>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li> </ul>	
②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	훈련생 모듈 관리자 모듈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인정받은 학급당 정원이 등재되어 있을 것</li> <li>·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li> <li>·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li> <li>· 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이 훈련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li> </ul>
		수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li> <li>·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li> </ul>
		평가 및 결과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훈련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li> </ul>
		훈련생 개인이력 및 수강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처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중인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이 훈련생 개인별로 갖출 것</li> </ul>
		질의응답(Q&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li> </ul>

	관리자 모듈	훈련과정의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훈련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li> </ul>
		과정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를 위한 시험 문항 또는 과제가 훈련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li> <li>· 훈련참가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li> <li>· 훈련생 개인별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li> </ul>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훈련생 아이피(IP) 주소 등을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li> <li>·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훈련생 아이피(IP) 주소 등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li> <li>· 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훈련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li> <li>· 제2조제14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것</li> </ul>
	교강사 모듈	교강사 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li> <li>· 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li> </ul>
③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자체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웹 서버, 디비(DB) 서버를 갖출 것</li> <li>· 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출 것</li> </ul>
		위탁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웹 서버, 디비(DB) 서버, 동영상서버, 디스크 어레이(Disk Array)로 구성된 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서버를 임차한 경우 임차한 해당 서버에 다른 원격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li> <li>·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출 것</li> <li>·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li> </ul>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비엠에스(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유실 없이 복구가 가능할 것</li> <li>· 보안 소프트웨어는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수탁훈련기관은 보안용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li> </ul>	

	네트워크	· 인터넷서비스 정보업체(ISP)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할 것
	기타(위탁훈련에 한정한다)	·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춘 것
④평가 및 수료기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는 시험, 과제제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li> <li>·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li> <li>·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 유형을 사용할 것</li> <li>※ 다만, 훈련과정 특성상 모사답안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문제은행 방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1개의 과제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li> <li>·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li> <li>·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li> </ul>
⑤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정한다)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것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 관리시스템 운영자 등의 운영인력을 갖춘 것</li> <li>·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li> </ul>

원격훈련인정요건			
<b>2. 우편원격훈련</b>			
① 우편원격 훈련을 가 르칠 수 있는 자	자체/위탁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과정별로 훈련생 500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li> <li>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li> <li>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li> </ul>	
②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	훈련생 모듈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상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인정받은 학급당 정원 이 등재되어 있을 것</li> <li>·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훈련교재배포,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li> <li>· 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이 훈련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li> </ul>
		수강신청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li> <li>·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생별 선택한 훈련교재명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 갖춘 것</li> </ul>
		평가 및 결과확인	· 학습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조회를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훈련생 개인이력 및 수강이력	· 훈련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처, 교재배송지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훈련과정명, 수강신청일, 선택한 교재명, 훈련진행상황,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등)이 훈련생 개인별로 갖춘 것
		질의응답(Q&A)	· 훈련과정 및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관리자 모듈	훈련 과정 의 진행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훈련교재발송일, 학습평가보고서 제출일, 평가결과 송부일, 학습 진도 등 당해 훈련과정의 진행상황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li> </ul>
		과정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를 위한 시험 문항 또는 과제가 훈련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li> <li>·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li> <li>· 훈련생 개인별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li> </ul>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현황, 평가결과, 침삭지도 내용, 훈련생 아이피(IP) 주소 등을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li> <li>· 평가결과, 침삭지도 내용, 훈련생 아이피(IP) 주소 등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li> <li>· 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훈련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li> <li>· 제2조제14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것</li> </ul>
교강사 모듈	교강사 활 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li> <li>· 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li> </ul>	
③ 전산시스 템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웹 서버, 디비(DB) 서버로 구성된 전용 시스템을 갖출 것 (서버를 임차한 경우 임차한 해당 서버를 다른 원격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li> <li>·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출 것</li> <li>·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li> </ul>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비엠에스(DBMS)는 과부하 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각종 장애 발생시 데이터의 유실 없이 복구가 가능할 것</li> <li>· 보안 S/W는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수탁 훈련기관은 보안용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li> </ul>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서비스 정보업체(ISP)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확보할 것</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li> </ul>
④ 평가 및 수요기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는 시험, 과제제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훈련생이 2개 이상의 교재 중 1개 이상을 선택하도록 구성된 훈련과정의 경우 평가내용은 동일해야 함)</li> <li>·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li> <li>·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li> <li>※ 다만, 훈련과정 특성상 모사답안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문제은행 방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1개의 과제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li> <li>·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li> <li>· 제출된 과제는 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li> </ul>
	수요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li> </ul>

⑤ 훈련 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정한다)	훈련시설	·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운영인력	· 훈련생 관리시스템 운영자, 훈련교재 발송담당자 등의 운영인력을 갖출 것 ·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⑥기타(위탁훈련에 한정한다)		· 훈련개시 이전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의 목적, 교과편성, 정부지원 훈련임을 고지할 것

【별표 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코드	직종	단가
0101	농업	2,297
0102	임업	2,320
0103	어업	2,314
0104	음식료품가공	2,308
0105	광업	2,354
0106	기타 농업·어업·광업	2,272
0201	섬유가공	2,322
0202	의복제조	2,214
0203	봉제	2,216
0204	제화	2,282
0205	디자인	2,451
0206	섬유기계	2,302
0207	기타 섬유	2,214
0301	화학제품제조	2,474
0302	요업	2,375
0303	화학기계	2,528
0304	위험물 및 가스취급	2,417
0305	기타 화학제품	2,375
0401	금속가공	2,398
0402	기타 금속	2,386
0501	기계가공·조립	3,218
0502	설계·제도	2,435
0503	정비	2,305
0504	운전	2,303
0505	용접·판금·배관	2,570
0506	기타 기계·장비	2,300
0601	토목	2,316
0602	건축	2,316
0603	국토개발	2,254
0604	기타 건설	2,243
0701	기계·설비·제어	2,325
0702	조립·제조	2,301
0703	동력생산	2,316
0704	전기공사	2,303
0705	기타 전기	2,303
0801	기계·설비·제어	2,328
0802	가공·조립·수리	2,243
0803	기타 전자	2,209
0901	통신설비·운용	2,443
0902	수리	2,314
0903	시스템	2,505
0904	프로그래밍	2,486
0905	데이터베이스	2,486

0906	정보·통신응용	2,434
0907	기타 정보·통신	2,314
1001	자동차	2,644
1002	조선	2,679
1003	항공	2,679
1004	기타 운송장비제조	2,644
1101	인쇄·출판	2,482
1102	디자인개발	2,394
1103	기타 산업응용	2,268
1201	귀금속·금속공예	2,437
1202	가구·목공예·도자기공예	2,314
1203	자수	2,244
1204	도장	2,291
1205	기타 공예	2,241
1301	음식서비스	2,435
1302	관광 및 숙박서비스	2,299
1303	기타 서비스	2,232
1401	재무 및 경영	2,466
1402	인사노무	2,287
1403	생산사무	2,410
1404	판매사무	2,404
1405	무역	2,284
1406	사무지원	2,289
1407	안전관리	2,284
1408	기타 사무	2,295
1501	금융	2,393
1502	증권·보험	2,398
1503	기타 금융·보험	2,368
1601	치료	2,153
1602	의료보조	2,362
1603	기타 의료	2,148
1701	환경관리	2,417
1702	기타 환경	2,380
1801	임원층	2,720
1802	관리층	2,720
1803	사원층	2,364

### 【훈련직종 예시】

대분류	중분류	예시직종	
01	농림·어업· 광업분야	01 농업	과수재배, 약용작물, 수경재배, 양액재배, 원예종묘, 유기농업, 채소재배, 화훼재배, 낙농, 특수가축, 한우비육, 꽃방, 시설원예
		02 임업	목재가공, 영림, 임산가공, 임업종묘, 영림기계, 일반버섯, 임산버섯, 조경수목농장경영, 산림
		03 어업	수산양식, 어로, 어병방역
		04 음식료품가공	두부제조, 수산식품가공, 육가공, 라면제조, 식품가공 및 개발
		05 광업	채광, 화약취급, 지하수시추
		06 기타	
02	섬유분야	01 섬유가공	기계편물, 날염, 침염, 제직, 직물가공, 편물, 방사, 방적, 양말편직 염색가공, 정련표백, 화섬사제조
		02 의복제조	양장, 양복, 한복, 캐주얼웨어, 의복수선, 의복제작, 니트웨어
		03 봉제	홈패션, 일반봉제, 모자봉제, 봉제
		04 제화	신발봉제, 제화, 신발류제조
		05 디자인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퀼트(패치워크)
		06 섬유기계	방적기보전, 방적기조정, 섬유기계, 섬유기계보전, 제직기조정
		07 기타 섬유	
0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01 화학제품제조	가족처리, 고무제품제조, 고압가스화학제품제조. 분쇄혼합, 석유정제, 시멘트제조, 신발류제조, 의약품제조, 일반화학제품제조, 종이제조, 타이어제조, 화장품제조, FRP제조, 플라스틱제품성형, 석유화학제품제조
		02 요업	도자기제조, 유리가공
		03 화학기계	화학반응기계
		04 위험물 및 가스취급	위험물취급, 고압가스(냉동)취급, 화학, 기계), 방화관리, 화약취급
		05 기타 화학제품	



대분류	중분류	예시직종	
04	금속분야	강관제조, 금속재료, 단조, 특수도금, 전기도금, 원형, 목형, 비철용해, 아연제련, 압연, 인발, 와이어로프제조, 열처리, 용광로제선, 전로제강, 전기로제강, 주조, 정밀주조, 제선, 제강, 주강용해, 축로, 열처리, 일반조형, 열간압연, 냉간압연, 반도체표면처리, 특수코팅, RP제작	
	02 기타 금속	비파괴검사(NDE), 비파괴시험기기운용	
05	기계·장비 분야	01 기계가공·조립	생산기계, 선반, 밀링, 연삭, 수치제어(선반·밀링), 시스템제어, 열기계, 전산응용가공, 정밀기계, 정밀측정, 치공구, CNC 선반,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공장자동화, 머시닝센터, 와이어 커터, 기계가공, 기계전자(메카트로닉스), 공유압(유압기초), 방전가공, 보링그라우팅, NC기계, 기계조립, 생산가공, 자동화 시스템, CNC공작기계기술, CAM, 기계설계제작, CNC기계, 컴퓨터응용기계, 반도체금형, 전산응용금형(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초정밀고속가공, 마이크로기계제작, 철도운수시스템운영, 동력기계제어, 산업용로봇제작, 생산정보시스템
		02 설계·제도	기계공정설계, 기계제도, 금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CATIA, 금형설계CAD, 프라스틱금형설계, 디지털기계설계
		03 정비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성형기계정비, 이륜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기관, 샤프트, 전기), 자동차검사, 전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항공기정비(기관, 기체, 장비, 전자), 자동차관리, 자동차기술, 카일렉트로닉스, 차량정비, 항만장비정비, 전동차정비
		04 운전	굴삭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사리채취기운전, 설펀기운전, 스크레이퍼운전, 아스팔트퍼니셔운전, 양화장치운전, 열차조작, 전동차운전, 준설선운전, 중장비운전, 지게차운전, 천정기중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항만하역장비조정, 건설기계운전, 타워크레인

대분류	중분류	예시직종	
05	기계분야	05 용접·판금·배관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로봇용접, 불활성가스아크용접, 연강피복아크용접, 파이프전기용접, 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플랜트설비), 건축배관, 공업배관(플랜트배관), 보일러, 보일러시공, 배관, 공관제조, CO <sub>2</sub> 용접, 아크용접, 티그 용접, 보일러배관, 건축환경설비, 열기계,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자동차판금(자동차차체수리), 보일러취급, 소방설비기사, 열관리, 공조냉동기계, 엘리베이터설치, 파이프용접
		06 기타 기계·장비	
06	건설분야	01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도제작, 지적(재)조사, 지적전산, 철도궤도, 측량, 측량전산, 항공사진, 위성측량(GPS), 건설공학, 토목시공, 토목CAD
		02 건축	건설공정관리, 건설품질검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시공, 도배, 목공, 미장, 비계, 석공, 온돌, 유리시공, 건축의장, 조적, 금속재창호제작, 철근, 철근콘크리트, 타일, 한옥, 황토집, 잠수, 창호제작, 목재창호제작, 온수온돌, 건축목재시공, 건축내장,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설계, 건축CAD실무, 목조주택시공, 건축인테리어, 실내(건축)디자인, DIY가구창업 및 인테리어디자인, 키친프라자창업및재테크, 토탈디자인하우스, 통나무주택시공, 건축설계모형제작, 목조건축시공, 경량철골주택조립, 건축마감, 시설물해체, 수중작업, 석공,
		03 국토개발	도시정비, 조경, 택지일반, 조경시공
		04 기타 건설	
07	전기분야	01 기계·설비·제어	디지털회로, 변전설비, 빌딩자동제어, 송배전설비, 신호보안, 전기계측제어, 전기기기, 전기기초, 전력전자, 지하철전기, 회전기기, PLC, 승강기, 빌딩관리, 전기, 전기제어및시스템, 승강기보수, PLC, 자동화제어기술, 철도신호, 전기시스템제어, 전기철도, 일렉트로닉스, 전기CAD,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치
		02 조립·제조	건전지제조, 모터펌프조립, 수·배전반조립, 자동판매기수리, 축전지제조, 케이블제조, 모터펌프제조
		03 동력생산	모의화력, 복합화력, 원자력
		04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계장공사, 동력배선
		05 기타 전기	전기감리실무, 전기안전관리

대분류	중분류	예시직종
08	전자분야	01 기기·설비·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전자, 공업전자기기, 무선설비, 음향영상기기, 전자계산기(컴퓨터시스템), 전자기기, 전산기계, 전기설비 및 자동제어, 하드웨어, 정보전자, 내장형하드웨어, 센서계측, 반도체장비설비, 자동제어설계, 전자회로CAD
		02 가공·조립·수리 PC수리, 반도체가공, 반도체조립, 사무자동화기기수리, 인쇄회로기판제작, 일반가전제품수리, 전자시계수리, 자기테이프제조, 전기전자기초, 전자계산기정비, 전자기기조립, 컴퓨터디스크가공, 컴퓨터헤드조립, 콘덴서조립, 전산기기수리, 마이크로파회로설계, 전자회로설비, 컴퓨터조립 및 설계업그레이드, PC조립창업, PC조립진단, 컴퓨터유지관리전문가, 개인용컴퓨터수리
		03 기타 전자
09	정보·통신분야	01 통신설비·운용 교환설비, 선로설비, 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설비, 전송설비, 전자(정보)통신설비, 레이더관측, 정보통신, 전기(정보)통신, 정보통신운용, 해양통신, 신호보안, 정보통신시스템, 통신망관리, 정보기계설비,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통신설비,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전송설비, 방송통신설비, 전자통신, 웹기반통신장비
		02 수리 통신기기(전화기)수리
		03 시스템 시스템분석 및 설계, 시스템시험, 시스템엔지니어링, MCSE, MCSD
		04 프로그래밍 UNIX, 프로그래밍일반, 객체지향프로그래밍, 4GL, C/S(Client Server)개발전산망관리자 및 프로그래밍, PC/SW전문가과정, 컴퓨터전문가과정, C언어, Visual Basic, 응용프로그래머과정, 솔루션개발자과정, JAVA전문프로그래밍(인터넷비즈니스전문가), Java개발자과정, 웹프로그래머,
		05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SQL, DB관리 및 시장분석, 산업정보관리

대분류	중분류	예시직종
09	정보·통신분야	06 정보·통신응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웹 디자인, 컴퓨터음악(MIDI), 인트라넷구축, 홈페이지작성, 인터넷마케팅, 인터넷정보검색, 인터넷전문가과정, 인터넷강사과정, 인터넷활용경영기술, 인터넷무역전문가, 중소기업전산화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 정보검색, 멀티미디어디자인, 웹마스터(몰마스터), 멀티미디어타이틀제작PD과정, 이동통신전문기술, 멀티미디어컨텐츠과정, 전자상거래, 금융정보검색사, 네트워크전문가, 정보기술전문가, 정보제공창업, 비디오통상실무과정, 음향영상기기 편집기술, 방송영상기술
		07 기타 정보·통신 IP창업
10	운송장비제조	01 자동차 자동차제조, 자동차냉난방장치부품제조
		02 조선 선박기관제조, 선박제조, 선체가공, 선체의장, 선체조립, 조선제도, 항해운용, 해기사,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도장, 전산응용조선제도, 선박기관외장
		03 항공 항공기기제조조립, 항공기기체제작
		04 기타 운송장비제조
11	산업응용분야	01 인쇄·출판 경인쇄, 그라비아인쇄, 사진제판, 스크린인쇄, 오프셋인쇄, 인쇄실무, 전자출판(DTP), 실크스크린기능사과정, 사진영상, 컴퓨터사진전문가, 인물사진수정기술습득과정, 직업사진기술, 사진, 사진촬영전문가, 컴퓨터출판디자인, 디지털사진, 전자자료제작
		02 디자인개발 가구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모델링(자동차), 발명품개발, 제품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설계(CAD), 모델링, 캐릭터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스플레이디자인, 디자인모형제작, 설계및그래픽, 게임프로듀서/게임디자인, 애니메이션디자인, 실내외광고디자인, 컴퓨터광고디자인, 광고제작실무, 가구설계, 캐릭터애니메이션, 스텐실통폐인팅 디자인, 디지털애니메이션, 맥킨토시디자인, 컴퓨터응용디자인, 3D, 아도브포토샵, 광고기획전문가, 신도불이상품개발, 환경벽화실무, 컴퓨터모델링기술, 제품응용모델링
		03 기타 산업응용 렌즈제작, 가공, 영상제작, 국제관광마케팅, 물류관리

대분류	중분류	예시직종	
12	공예분야	01 귀금속·금속공예	귀금속가공, 보석가공(다이아몬드), 보석감정, 금속공예, 귀금속공예, 보석판매사자격증취득과정, 보석디자인, 귀금속경영자, 귀금속세공사
		02 가구·목공예·도자기공예	가구제작, 나전칠기, 목공예, 칠보공예, 목조장식, 도자기공예, 가구설계제작, 가구리품
		03 자수	기계자수, 수자수, 자수
		04 도장	건축도장, 가구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자동차도장
		05 기타 공예	조화공예, 표구, 인장공예, 석공예, 플라워아트
13	서비스분야	01 음식서비스	한식조리,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조주, 복어조리, 제과제빵창업, 햄소세지제조, 호텔조리, 동양조리, 외식산업및위탁급식산업, 칵테일, 조리학
		02 관광 및 숙박서비스	관광상품개발, 국내·외관광, 관광통역안내원, 서비스리더능력개발, 판매서비스, 호텔관리·중사, 호텔지배인, 항공여행관리, 자연환경안내자
		03 기타 서비스	미용, 이용, 세탁, 빌딩관리, 주택관리, 피아노조율, 건강피부관리창업, 분장사, 메이크업코디네이터, 주택관리사보, 레크레이션지도자, 문화예술실무자, 스포츠맛사지, 웨딩설계전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컴퓨터가정교사, 놀이방교사, 보육교사, 가정유아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어린이와 노인상담사, 독서교육지도자, 평생교육사, 종이접기, 아동미술교육교사
14	사무관리분야	01 재무 및 경영	경영관리종합, 단지계획, 도시계획, 세무회계, MIS계획과정, 경리사무, M&A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국제회계, 재무관리, 컨설팅(경영상담, 지도)창업, 재테크가이드실무, 벤처기업창업, 업종별창업, 재경전문인력양성, 세무관리전문가, 경리실무, SOHO창업과정
		02 인사노무	직무교육, 직무분석, 노무관리, 실업극복상담원, 다국적기업취업/전직을 위한 카운셀링
		03 생산사무	생산성향상실무, 업무개발, 품질관리종합, 통계적 품질관리, 구매관리, 프로젝트개발자, 품질경영전문가, 생산및경영기술, 품질보증체제인증심사(ISO)
		04 판매사무	기술판매, 마케팅관리, 판매관리, 물류유통, 판매서비스, 유통업소자본창업, 프랜차이즈창업및영업점장

대분류	중분류	예시직종	
14	사무관리분야	05 무역	무역사무, 무역실무, 국제비즈니스, 무역전문가양성, 인터넷무역창업, 무역실무및무역영어, 국제통상실무및무역업오피어업창업, 오피어창업
		06 사무지원	무역자동화, 비서, 사무자동화, 스프레드시트, 워드프로세서, 지하철역무, ACCESS, 국제회의전문가, 속기사, 정보처리, 사무기능, 행정실무, 법규 및 소송실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PC종합실무과정, 컴퓨터활용전문가, 엑셀, 파워포인트, PCT과정, MS-OFFICE, 컴퓨터속기, 사무서비스인력양성, 전산(OA/WP), Office&컴퓨터활용, 마이크로소프트공인자격, 사무능력활용, 법무전문
		07 안전관리	안전관리, 산업안전
		08 기타 사무	해운실무, 해무사양성
15	금융·보험분야	01 금융	TELLER LEVEL UP 과정, 국제금융, 금융경영, 금융법률, 기타금융, 석외, 마케팅, 수신, 여신, 여신법률, 외국환, 전략마케팅실무, 감정평가, 단기금융, 금융선물실무, 선물거래사, 펀드매니저, 금융MBA과정, 중소기업금융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투자상담사
		02 증권·보험	보상실무, 생명보험, 손해보험, 영업소장양성과정, 전문상담원, 증권, 채권관리, 손해사정인, 증권분석사, 보험판매관리, 보험업창업
		03 기타 금융·보험	
16	의료분야	01 치료	물리치료, 방사선치료, 임상병리
		02 의료보조	간호, 간호조무사, 의무기록, 의무행정, 치기공, 치위생, 간병인, 응급구조사, 건강상담관리자, 심리치료카운셀러, 산후조리
		03 기타 의료	의료기수리, 정비
17	환경분야	01 환경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환경관리, 환경보전및제어, 환경기능, 환경설비, 소음진동평가
		02 기타 환경	폐자원활용
18	계층별훈련분야	01 임원층	최고경영자과정, 경영간부과정, 임원과정
		02 관리층	상급관리자과정, 신입관리자과정(MTP), 팀관리자과정, 감독자과정(TWI)
		03 사원층	중견사원과정, 신입사원과정, 여직원과정

**【별표 3】 조정계수**

**<별도 첨부>**

- \* 훈련비용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로 훈련인원 및 훈련기간 증감에 따른 훈련비용 단가 변화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치
- 즉, 350시간(최고시간)과 50명(최고인원)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점 1.000으로 하고, 최저시간(30시간)과 최저인원(20명)이 만나는 지점이 2.102가 되게 함.
- 시간과 인원이 적더라도 고정비용(시설·강사·홍보비 등)이 투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정계수를 기준점보다 높게 책정하고, 시간과 인원이 최저점일 때 조정계수를 각각 1.450으로 하여 균형을 맞춤('99년과 '05년 훈련비 단가를 분석 자료로 활용)

**【별표 4】 인터넷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

(단위 : 원)

구분	시 간 수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컨텐츠 심사등급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A	13,300	26,600	39,900	53,100	62,400	71,700	81,000	
B	10,700	21,300	31,900	42,500	49,900	57,400	64,800	
C	8,800	17,500	26,200	34,900	41,000	47,100	53,200	
컨텐츠 심사등급	3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44시간 미만	4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52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A	90,300	98,300	106,200	114,200	122,100	128,800	135,500	
B	72,200	78,600	84,900	91,300	97,700	103,000	108,300	
C	59,300	64,500	69,700	75,000	80,200	84,600	88,900	

**【별표 5】 우편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월 지원한도액**

(단위 : 원)

훈련과정 심사 등급	A	B	C
A	38,000	32,000	26,000
B	36,000	30,000	24,000
C	34,000	28,000	22,000
자체 훈련	35,000	29,000	23,000

<b>훈련 실시 계획서</b>						
<b>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b>						
명칭		훈련기관코드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형태	<input type="checkbox"/>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시설 <input type="checkbox"/> 학원 <input type="checkbox"/>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의 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b>2. 훈련과정 인정 신청내용</b>						
가. 훈련개요						
훈련과정명				훈련직종코드		
관리자		전화		한국고용직업분류		
훈련방법		훈련주체	학급정원 (학급수)	훈련일수 (시간)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여부	
<input type="checkbox"/> 집체 <input type="checkbox"/> 현장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혼합 ○ 집체+현장 ○ 현장+인터넷   ○ 현장+우편 ○ 집체+우편   ○ 집체+인터넷 ○ 집체+현장+인터넷 ○ 집체+현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자체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자체+위탁		집체 <input type="checkbox"/> 예 현장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우편 인터넷		
나. 훈련내용						
훈련목적	주요 훈련내용	관련 자격증	훈련대상요건 (훈련생선발요건)	훈련생 출결관리 방법		
	※ 훈련일정 포함		※ 훈련대상 한정 여부 (대상범위)			
다. 훈련실시장소(집체·현장·혼합훈련만 기재, 원격훈련은 제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훈련일시	강의실 면적(m <sup>2</sup> )	비고
※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 호실 기재(동일건물 내에서 강의실 자율변경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라. 훈련시설·장비·소프트웨어 등(해당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 중 주요 시설·장비만 기재)										
시설 및 장비명	보유수량	단위	해당과목 명							
마. 훈련교사										
성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학력	전공	자격요건 해당항목	근무형태				
※ 근무형태는 채용(정규직/시간제), 위촉으로 구분 ※ 자격요건 해당여부는 집체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원격훈련은 [별표1]의 해당 항목을 기재										
<b>3. 원격훈련과정 주요 내용</b> (원격훈련 및 원격훈련을 포함한 혼합훈련만 기재)										
가. 심사 승인받은 우편훈련과정 및 콘텐츠 요약정보										
1) 우편										
과정코드	승인결과		과정명	훈련분량 (개월)	훈련 대상	교재정보			교·강사 요건	승인일자
	활성/ 비활성	일반/ 고급				교재명	자체/ 구입	발행 년도		
2) 인터넷										
콘텐츠 코드	승인결과		콘텐츠명	콘텐츠 분량 (시간)	승인받은 기관	훈련대상	교·강사 요건	승인일자		
	활성/ 비활성	일반/ 고급								
나. 훈련과정 상세 일정										
차시	주요 진행 내용					학습방법 (혼합훈련만 집체/원격 구분 기재)		훈련장소 (혼합훈련만 기재)		
다. 진도관리 방법(우편훈련)										
라. 훈련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기타						
마. 평가내용 및 채점기준										
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내용	채점기준	비고						

<b>발신 기관 명</b>																
수신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oo 지부·지사) (경유) 제 목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훈련기관 코드	훈련 방법		<input type="checkbox"/> 집체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혼합	<input type="checkbox"/> 현장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훈련직종코드		훈련 주체	<input type="checkbox"/> 자체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자체+위탁	훈련과정명 (인정코드)		인정일자					
훈련실시장소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훈련실시 총인원			비용지원 대상인원		지원대상 외 인원								
일 정	1일차							2일차								
교 시	훈련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훈련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합속 여부					식사제공 여부											
<input type="checkbox"/> 확정 훈련생 명단(비용지원 대상 훈련생만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훈련실시(훈련비용) 수급 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유급휴가 훈련해당 (대체인력 포함)	고용유지 훈련해당	가능기술 장려해당	교대제 전환해당	건설일용 근로자해당	비정규직 근로자해당	간접직 근로자해당	구직자 A, 채용예정자 B, 자사근로자 C, 전직(이직) 예정근로자 C1, 타사근로자 D, 적용제외근로자 E	훈련비용 (위탁훈련의 경우 실제 훈련비용을 기재)				수료 여부
												총비용	훈련비	임금 (대체인력)	훈련수당	
											A, B, C, C-1, D, E					
											A, B, C, C-1, D, E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에 따라 훈련실시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1. 채용약정서, 구직등록필증 등 훈련생 자격 여부 확인서류 1부(전산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2.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 1부(전산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b>훈련 기관 의 장</b>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97mm×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발신 기관 명</b>																
수신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oo 지부·지사) (경유) 제 목 훈련수료자보고서 제출																
훈련기관 코드	훈련 방법		<input type="checkbox"/> 집체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혼합	<input type="checkbox"/> 현장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훈련직종코드		훈련 주체	<input type="checkbox"/> 자체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자체+위탁	훈련과정명 (인정코드)		인정일자					
훈련실시장소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학급당 평균 실시인원			비용지원 대상인원		지원대상 외 인원								
<input type="checkbox"/> 훈련생 명단(훈련실시신고서에 기재된 훈련생만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훈련실시(훈련비용) 수급 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유급휴가 훈련해당 (대체인력 포함)	고용유지 훈련해당	가능기술 장려해당	교대제 전환해당	건설일용 근로자해당	비정규직 근로자해당	간접직 근로자해당	구직자 A, 채용예정자 B, 자사근로자 C, 전직(이직) 예정근로자 C1, 타사근로자 D, 적용제외근로자 E	훈련비용 (위탁훈련의 경우 실제 훈련비용을 기재)				수료 여부
												총비용	훈련비	임금 (대체인력)	훈련수당	
											A, B, C, C-1, D, E					
											A, B, C, C-1, D, E					
											A, B, C, C-1, D, E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에 따라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출석부 사본																
<b>훈련 기관 의 장</b>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주의사항 : 학급당 평균 실시인원은 총 실시인원을 학급수로 나누어서 기재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297mm×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